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6월 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8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7(월)	담당부서	혁신지원팀
담당과장	김종선 팀장(044-203-4630)	담당자	박형진 사무관(044-203-4631)

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

- 「자유무역지역법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문승욱)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"자유무역지역법") 개정안이 6.8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

□ **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제도는 다음과 같음**

❶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·가공업 조건부 입주허용 (법 §제10조의2)

○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**가정간편식(HMR) 시장이 빠르게 성장***함에 따라, 소고기, 분유 등 **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**이 제기되어 왔음**

* **H**ome **M**eal **R**eplacement 시장 전망 (출처 : Global Data Intelligence)
: (중국) ('17) 66억불 → ('21) 114억불, 73.2%↑ / (일본) ('17) 253억불 → ('21) 311억불, 22.9%↑
** '19.1월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양허관세 농축산물 가공업 입주허용 합의

○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**농축산물(63개 양허관세 품목*) 제조·가공업체**는 **전량 재수출 및 물품관리 체계 구축** 등 **조건부**로 입주가 허용됨**

* 국가간 가격차가 상당해 수입시 관세부과 품목(소고기, 분유, 마늘 등 63개 품목)
** 입주조건 : ① 전량 재수출 ②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③ 보세사 채용 등

○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,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**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**될 것으로 기대됨

❷ 양허관세 농축산물의 국내 밀반출 사전차단

○ **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**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

- **(국내 반출금지)**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**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·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,** (법 §제29조)

- **(역외작업 금지)**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·가공하고 **자유무역지역 외(外)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함** (법 §제34조)

❸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

○ 그밖에 **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됨**

- **(미반출·양도 물품 매각)** 물류흐름 개선을 위하여 입주계약 해지자가 **외국물품 등을 6개월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** 세관장이 **매각할 수 있도록 함** (법 §제15조)

- **(환적화물 반입신고)** 물품을 옮겨 싣는 **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**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,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**신고하도록 조치함** (법 §제29조)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법안 시행(12월중순 예정)에 앞서, 하위규정 개정 등 **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**하고 자유무역지역에 **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**하여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박형진 사무관(☎ 044-203-46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자유무역지역(FTZ) 현황

□ (개념 · 목적) 수출 · 물류 확대, 외투 유치 등을 위해 **자유로운 제조 · 물류 · 유통,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**

*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 인정

※ **(지원해택)** 관세유보, 부가가치 영세율, 저렴한 임대료(공시지가의 1% 수준),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· 임대료 감면 등

□ (지정현황) **13개 지정 · 운영**(면적 34.7㎢, 여의도 면적의 11.8배)

※ **(관리 · 운영)** 자유무역지역 지정, 정책 · 제도 · 법 등 **총괄은 산업부**, **관리는** 유형별로 **3개 부처(산업부, 해수부, 국토부) 담당**

<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('20.6월 기준) >

구 분		지정일	면 적	관리권자
산단형 (5.8㎢)	마 산	'70. 1. 1	0.96㎢	산업부 (자유무역지역 관리원)
	군 산	'00.10. 6	1.26㎢	
	대 불	'02.11.21	1.16㎢	
	동 해	'05.12.12	0.25㎢	
	율 촌	'05.12.12	0.34㎢	
	울 산	'08.12. 8	0.82㎢	
	김 제	'09. 1. 6	0.99㎢	
항만형 (25.6㎢)	부 산 항	'02. 1. 1	12.2㎢	해수부 (해양청/항만공사)
	광 양 항	'02. 1. 1	9.05㎢	
	인 천 항	'03. 1. 1	1.96㎢	
	포 항 항	'08.12. 8	0.93㎢	
	평택당진항	'09. 3.30	1.43㎢	
공항형 (3.4㎢)	인 천 공 항	'05. 4. 6	3.37㎢	국토부 (항공청/공항공사)
합 계			34.72㎢	



□ (입주현황) 자유무역지역 부지, 표준공장(임대건물)에 **국내 · 외투기업 1,025개社 입주**, 입주율은 87.2% ('20.12월 기준)

<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현황('20.12월 기준, 단위 : 개社) >

구 분	전 체	산단형	항만형	공항형
입주율(%)	**87.2**	87.0	86.8	96.6
입주기업(외투기업)	**1,025 (293)**	293 (160)	144 (96)	588 (37)